

CP 신고처리 지침

제 1 조(목적)

이 지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규정 제18조 [제보자 시스템], 제19조 [제보절차], 제20조 [제보자의 보호] 및 제21조 [제보자의 포상]에 근거하여 엘트웰(주)(이하 “회사” 라고 한다)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, 부정부패, 윤리강령 위반사항, 업무개선 필요사항 등을 접수하여,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한 회사 분위기 조성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이 지침은 공정거래관련 신고처리에 관하여 법령과 사규 및 공정거래자율준수운영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.

제 3 조(용어정의)

- ① “내부신고” (이하 “신고” 라 한다)란 회사 내의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“직원” 이란 전 임직원(별정직 포함)을 말한다.
- ③ “위반사실” 이라 함은 윤리규정 및 실천지침 위반 및 비윤리적인 부정행위와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말한다.
- ④ “신고자” 란 공정거래 관련법령, 기타 회사의 사규 등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을 경우, 이를 자율준수업무 절차에 따라 자율준수 관리자 또는 기업윤리추진사무국에 신고하는 임직원 및 거래당사자를 말한다.
- ⑤ “신고자 포상” 이란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신고자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하는 것을 말한다

제 4 조(신고의무)

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거나 다른 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신고의 대상)

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

- ①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, 비위, 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사회적 지탄 행위
 - 1)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및 접대, 편의제공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.
 - 2)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
 - 3)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, 청탁 등으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
 - 4)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 - 5)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
 - 6) 회사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, 임직원의 고의적인 직무(업무)태만, 관리감독 소홀, 월권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
 - 7) 사내 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
 - 8) 기타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제반 행위
- ②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 손상,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
- ③ 뇌물수수, 횡령, 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 행위
- ④ 임직원의 위법, 부당한 업무처리
- 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
 - 1) 부당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
 - 2) 불공정거래행위

- 3) 약관법 위반행위
- 4)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
- 5) 기타 공정경쟁 관련법 저촉행위
- ⑥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, 부당한 지시

제 6 조(신고방법)

제5조에 의한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위반 내용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기업윤리추진사무국에 신고한다. 다만, 신고대상 사실이 진행 중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신고 후 관련 증거를 보완한다.

제 7 조(신고처리)

신고처리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.

- ① 신고접수 및 사실 확인
 - 1) 신고접수부서는 경영기획감사실 및 윤리경영 홈페이지 Hot-line을 통한 기업윤리추진사무국로 한다.
 - 2) 접수부서는 접수 후 최단 기간내에 사실여부를 확인한다.
 - 3) 신고내용이 제5조 5항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기업윤리추진사무국에서 담당하며, 그 외의 위반사항은 감사실에서 확인한다.
- ② 보고 및 감사실시
 - 1) 감사실시결과 조치요구는 감사업무규정에 따른다.
 - 2) 감사결과는 6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기한 내 통보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전달하여야 한다.
- ③ 자체종결
 - 1)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도가 미미하고, 감사실익이 없을시 내부 결재를 통하여 자체종결 처리한다.
 - 2) 자체종결 시에도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신고자 비밀보장)

① 보호정책

- 1)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. 단, 타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한다.
- 2) 신고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관리하고, 신고시스템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체계로 보호되어야 한다.
- 3) 신고접수 담당자는 신고에 대한 비밀을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내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.
- 4) 회사 임직원인 경우 본인이 관련된 부정,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보호대상자

- 1) 신고자의 보호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증거체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. 또한 신고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고 정보도 철저히 보호되며, 그 대상자는 내, 외부 신고자, 자진 신고자이다.

③ 보호내용

1) 비밀보호

- 신고자 신원공개 금지
-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
- 신고자가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정보 유출 금지
- 혐의대상자 또는 혐의대상 기관, 부서 등

2) 신분보장 및 처우

- 신고자의 신분(인사)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
- 승진,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회사수익 증대기여 등 신고에 대한 공로에 대하여 인사상 혜택을 부여
-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할 경우 최우선 배려

3) 신분보장 조치요구

-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감사부서장은 조사 후 해당 임원에게 신분보장 조치요구 또는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.
-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감사부서는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토록 한다.

4) 책임감면

-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 처분시 비위정도, 평소 근무태도,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이 가능하다.
-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면책을 원칙으로 한다.
-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의 자진신고, 고백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신고자 불이익 처분시 비위정도, 평소 근무태도,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이 가능하다.

제 9 조(신고자 포상)

- ① 신고자의 유공에 대하여는 기업윤리추진사무국의 추천에 의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하며 승진가점 등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②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대상자의 신원과 포상 내용 등에 대한 비밀유지를 할 수 있다.

제 10 조(포상 및 보상 제외)

- ①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판단이 곤란한 경우
- ② 중복된 신고이거나 감사 및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
- ③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신고사항
- ④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공개된 사항

⑤ 단순 업무개선 사항

⑥ 기타 포상 및 보상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 11 조(신고의 기한)

위반사실이 제5조에 정한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(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의 경우에는 3년) 이내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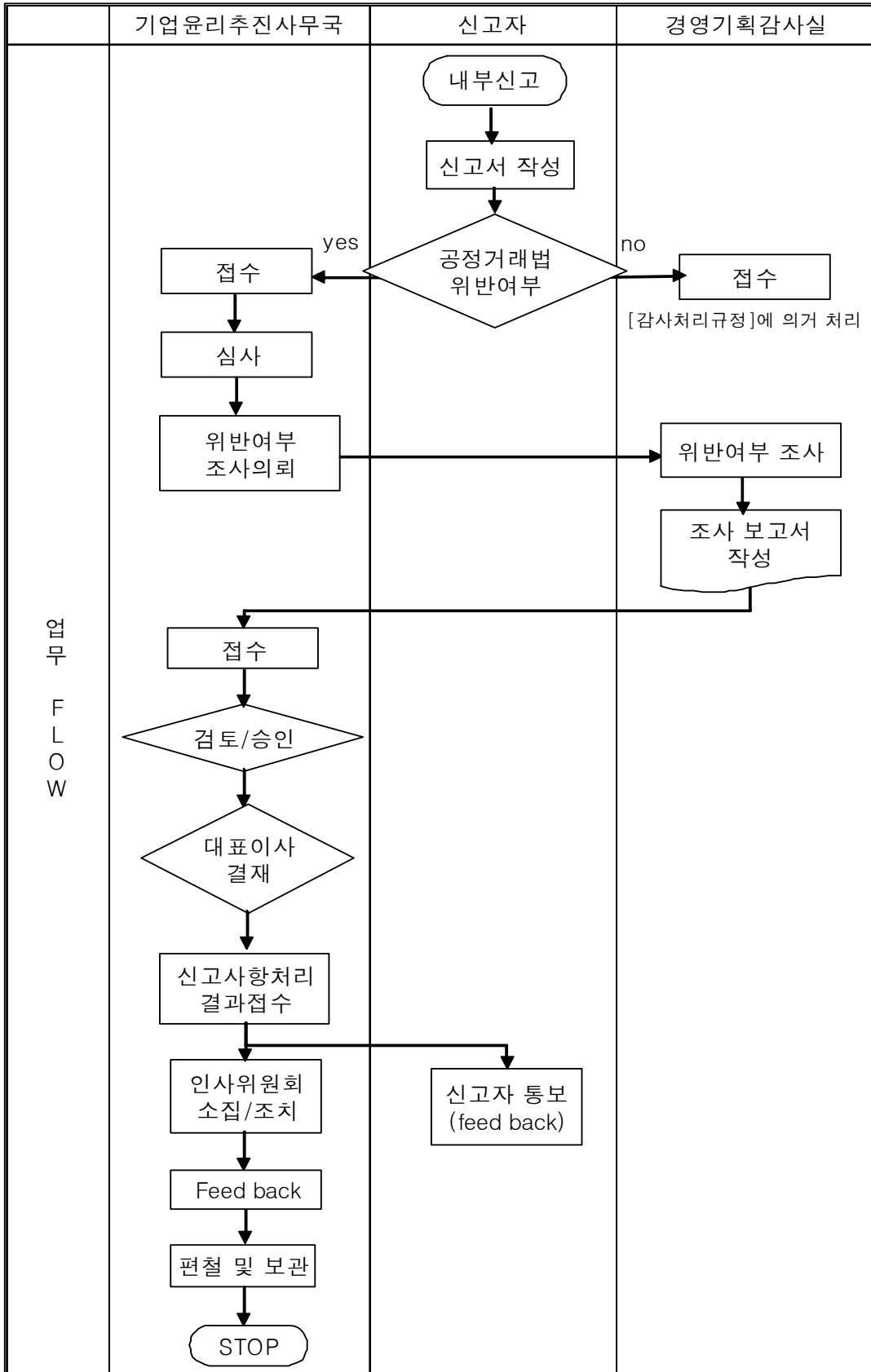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 1]

절 차	비고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위반사실 신고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위반여부 조사실시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조사결과</div> 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신고자 ◇ 감사실 ◇ 기업윤리 추진사무국 ◇ 감사실 ※신고접수후 30 일 이내 ◇ 감사실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-bottom: 5px;">CP불공정거래행위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-bottom: 5px;">기업윤리추진사무국 제출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-bottom: 5px;">심의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-bottom: 5px;">조치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">신고처리결과 통보 및 포상금 지급</div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-bottom: 5px;">CP불공정거래행위外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">감사처리규정에 따름</div> </div> 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기업윤리 추진사무국 ◇ 본사 ◇ 본사→신고자

[별표 2] CP내부신고 처리 Flow chart



[감사처리규정]에 의거 처리

신고자 통보
(feed back)